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19. 6. 18.(화) / 총 8매(본문4)
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주종완, 사무관 류동훈, 주무관 박준식 • ☎ (044) 201-3514, 3515
보 도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개정(‘18.12)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18년 추석과 ‘19년 설 명절대비 점점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

\*\*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 한편,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되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6.12)하였으며,

-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②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 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하였다.

\* 예) 토목 7억 →5억 원, 건축 5억 →3.5억 원, 실내건축 2억 →1.5억 원 등

\*\* 기존 업체는 자본금이 낮아져 추가 예치금 없이도 보증가능금액은 상향

○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③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 5점 초과: 과태료(300만 원), 10점 초과 :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 원)

### ④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

-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 또한,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 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 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하도급 5천만 원 미만, 3개월) 이내

## ⑥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12.19부터 시행)

○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 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류동훈 사무관(☎ 044-201-3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건설업종별 자본금 완화(별표 2)

(법인/개인)

업 종	자본금		업 종	자본금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토목공사업	7/14억	5/10억	철도·궤도공사업	3/6억	2/4억
건축공사업	5/10억	3.5/7억	포장공사업	3/6억	2/4억
토목·건축공사업	12/24억	8.5/17억	수중공사업	2억	1.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24억	8.5/17억	조경식재공사업	2억	1.5억
조경공사업	7/14억	5/10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억	1.5억
실내건축공사업	2억	1.5억	강구조물공사업	3/6억	2/4억
토공사업	2억	1.5억	철강재설치공사업	10/20억	7/14억
습식·방수공사업	2억	1.5억	삭도설치공사업	3/6억	2/4억
석공사업	2억	1.5억	준설공사업	10/20억	7/14억
도장공사업	2억	1.5억	승강기설치공사업	2억	1.5억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억	1.5억	가스시설시공업(1종)	2억	1.5억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억	1.5억	가스시설시공업(2종)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억	1.5억	가스시설시공업(3종)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억	1.5억	난방시공업(1종)	-	-
기계설비공사업	2억	1.5억	난방시공업(2종)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억	1.5억	난방시공업(3종)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억	1.5억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	2억

## [별표 3]

## 1. 용어의 뜻

-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 2. 벌점의 부과기준

-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점
  - 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별표 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 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1회 해당	2회 이상 해당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4개월	8개월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개월	4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개월	8개월